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포괄적 조정명령

2022.02.09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 개선 및 천연가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2년 2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은 ① LNG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명령 도입,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보고 규정 신설, ③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정규정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①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②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③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④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제20조 제3항 신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보고 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음 ① 가스수급계획 이행실적 및 관련 현황 ② 조정명령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천연가스 수입계획실적 ④ 천연가스 저장시설 이용계획실적 ⑤ 발전용산업용열병합용열 전용 설비용 용도별 사용 실적 ⑥ 천연가스 처분 현황 및 비용	제23조 제3항 신설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범위 확대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와 선박용천연가스간 상호 교환 허용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처분 범위 확대	제6조 제2항 제5호, 제6조의 12 제2항 제3호제4호 신설
--------------------------------------	--	--

[3] 시사점

개정 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에 관한 조정"만으로 조정명령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등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정명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천연가스 수급과 관련하여 사실상 조정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을 국가통합 수급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는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가스도매사업자(他자가소비용직수입자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방식에 의해서만 제3차 처분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방식에 따른 처분을 허용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사업으로서 LNG 벙커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와 선박용 천연가스를 상호 교환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사업자간 LNG 수급환경이 좀 더 유연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는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 9일분에 해당하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에 대한 천연가스 비축의무 확대 방안 검토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2022년 2월 3일자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2월 4일자 설명자료를 통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에 대한 비축의무 설정 방안에 관하여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동향에 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이고, 특히 글로벌 LNG value chain, LNG 운송 및 보관, LNG 발전소 등으로 이어지는 LNG 산업 전반에 관한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구성원

이상현

변호사

02-316-4068

정수용

변호사

02-316-4345

shlee@shinkim.com

syjung@shinkim.com

양승규

변호사

02-316-4048

sgyang@shinkim.com

류재욱

변호사

02-316-1635

jwryu@shinkim.com

조현미

변호사

02-316-1643

hmcho@shinkim.com

박희훈

변호사

02-316-7917

hhpark@shinkim.com